교육과정 운영 위원회 규정

제1장 총 칙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(이하 '본 대학'이라 한다)학칙 제35조 교육과정에 의거 학칙 제2조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개선과 발전적인 운영 방안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- 제 2 조 (교육과정의 목표) 본 대학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교육의 국가목표를 지향한다.
 - 1. 전문대학 고유의 설립목적인 산업사회의 전문 직업인 육성 배출
 - 2. 국·공립기관 등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학문 수요의 충당
 - 3. 산업 및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1인 1기, 다 자격취득인의 양성과 교과 편성
 - 4. 신학문의 연구 및 그 교과목에 대한 교재개발로 본 대학의 특화 발전책 추진
- 제 3 조 (교과목의 현실화) 본 대학의 전문교과로 구성하고 각각 필수와 선택 과목을 둘수 있으며,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과목을 편성한다.
 - 1. 교과목의 배정은 학기별, 학년별 수준에 의한 학문체계를 단계화
 - 2. 각 학과별 학습내용과 실습수준의 심화과정은 개론, 각론, 전공분야로 순차화
 - 3. 각종 국가기술고시에 대한 자격별 시험과목을 교과목으로 현실화
 - 4. 국·공립기관 및 산업체의 채용시험과목과 현장적응 공동과목은 교양 과정화로 편성 할수 있다.
- 제 4 조 (교과배정과 학점단위) 학점배정은 최소 주당 1과목 1시간을 1학점으로 하며, 실험·실습은 그 1/2로 한다.

제2장 교육과정 운영위원회

- 제 5 조 (설치) 본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위원회(이하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- 제 6 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각 학과 학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 - ② 교양·교직과 위원은 필요시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제 7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교육목표 설정과 교육방침에 관한 사항

- 2. 교육과정 개선,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3. 신학문에 대한 교과과정의 새로운 개발에 관한 사항
- 4. 신 교과과정에 따른 대치과목에 관한 사항
- 5. 교재개발 및 그 편찬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 8 조 (회의) 위원회는 학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9 조 (심의 의결사항의 처리)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결과를 회의록 또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학평의원회에 심의를 거처 학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